##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44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서영교·김문수·이해식

송재봉 • 윤준병 • 이광희

김준형 • 한민수 • 박홍배

임오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사 지연 등을위한 고의적인 회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 바,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기피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11(수사방해죄) 내란, 외환, 또는 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45조의11(수사방해죄) 내란,
	외환, 또는 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00조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 또
	는 기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